

# 한국은행 경남본부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운용기준

2025. 6. 26일 개정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운용세칙」(이하 “세칙”) 및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운용절차」(이하 “절차”)에 따라 한국은행 경남본부에 배정된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한도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① 경남본부에 배정된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한도의 지원 대상은 <별표1>에서 정한 지원부문 및 선정기준을 충족한 경우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2>에서 정한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지원대상 제외업종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3조(사후심사 자료제출)** 경남본부장은 절차 제5조에 따른 사후심사시 금융기관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 대출금원장(사본)
2. 사업자등록증(명)(사본)
3. 금리산출표(사본)
4. 지원대상업체 입증 서류(유관기관 인증서 및 추천서, 확인서 등)
5. 기타 경남본부장이 요청한 서류

**제4조(평가관리 기준)** 절차 제6조제1항에 따른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1. 금리 감면폭(30%)
2. 제출자료의 정확성(20%)
3. 대출취급실적 및 소명자료, 사후심사 자료 등의 제출기한 준수 여부(20%)
4. 제도에 대한 이해도 및 규정 준수 여부(20%)
5. 제도 운영관련 협조도(10%)

**제5조(기타 사항)**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대출규정」,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대출세칙」,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운용세칙」 및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운용절차」 등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2019. 8. 30.>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세칙의 시행일 전에 종전 세칙에 따라 이미 취급된 대출에 대하여는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

부 칙 <2020. 5. 28.>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0년 6월 1일 금융기관 대출취급분(2020.8월 한도 배정)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세칙의 시행일 전에 종전 세칙에 따라 이미 취급된 대출에 대하여는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

부 칙 <2020. 11. 9.>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0년 12월 1일 금융기관 대출취급분(2021.2월 한도 배정)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세칙의 시행일 전에 종전 세칙에 따라 이미 취급된 대출에 대하여는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

부 칙 <2021. 8. 31.>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1년 9월 1일 금융기관 대출취급분(2021.11월 한도 배정)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세칙의 시행일 전에 종전 세칙에 따라 이미 취급된 대출에 대하여는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

부 칙 <2022. 1. 10.>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2년 1월 28일 금융기관 대출취급분(2022.3월 한도 배정)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세칙의 시행일 전에 종전 세칙에 따라 이미 취급된 대출에 대하여는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

부 칙 <2022. 10. 26.>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2년 11월 1일 금융기관 대출취급분(2023.1월 한도 배정)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금융기관 앞 배정된 경남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은 당행 지원종료일까지 종전 기준에 따른다.

부 칙 <2023. 3. 28.>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3년 4월 1일 금융기관 대출취급분(2023.6월 한도 배정)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금융기관 앞 배정된 경남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은 당행 지원종료일까지 종전 기준에 따른다.

부 칙 <2023. 8. 30.>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5항의 기준 개정은 202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기준의 시행일 전에 이미 취급된 대출에 대하여는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

부 칙 <2024. 3. 21.>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4년 4월 1일 금융기관 대출취급분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기준의 시행일 전에 이미 취급된 대출에 대하여는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

부 칙 <2024. 7. 25.>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4년 8월 1일 금융기관 대출취급분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기준의 시행일 전에 이미 취급된 대출에 대하여는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

부 칙 <2024. 12. 19.>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5년 1월 1일 금융기관 대출취급분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기준의 시행일 전에 이미 취급된 대출에 대하여는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

부 칙 <2025. 4. 25.>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5년 5월 1일 금융기관 대출취급분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기준의 시행일 전에 이미 취급된 대출에 대하여는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

부 칙 <2025. 6. 26.>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5년 7월 1일 금융기관 대출취급분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기준의 시행일 전에 이미 취급된 대출에 대하여는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

<별표1>

지원대상업체 선정기준<sup>1)3)</sup>

지원 대상코드	지원 대상	지원 부문	선 정 기 준
A1	창업기업	일반 지원 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기업중 제조업(KSIC 업종코드 10~34) 또는 아래의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창업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단 동 시행령 제4조 해당업종은 제외</li> <li>* 지원대상 서비스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정보통신업(KSIC 업종코드 58~63)</li> <li>②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KSIC 업종코드 70~73)</li> </ul> </li> </ul>
A2	벤처기업	일반 지원 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상의 벤처기업</li> </ul>
A3	혁신기업	일반 지원 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소벤처기업부 선정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li> <li>-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의 신기술(NET) 및 신제품(NEP) 인증기업</li> <li>-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참여기업</li> <li>- 해당업체의 사업목적과 관련있는 특허 보유기업</li> <li>-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첨단기술·제품 확인서 보유기업</li> <li>- 중소벤처기업부 선정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으로서 제조업(KSIC 업종코드 10~34), 건설업(KSIC 업종코드 41~42) 영위기업</li> </ul>
A4	녹색기업	일반 지원 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 2에 의거 환경부가 녹색기업으로 선정한 제조업체</li> <li>-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의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정한 환경표지의 사용을 인증받은 제품 제조업체</li> <li>-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8조에 의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정한 환경성적표지(EDP)의 사용을 인증받은 제품 제조업체</li> <li>-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인증한 GR마크(우수 재활용품 품질인증)가 부여된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체</li> <li>-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제5조에 의거 에너지관리공단의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인증을 받은 기업</li> <li>-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3조에 의거 에너지관리공단의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을 받은 기업</li> <li>- 중소벤처기업부가 선정한 "우수 Green-Biz" 선정기업</li> </ul>
A5	연구개발 우수기업	일반 지원 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개발비*가 매출액의 2%(서비스업**은 0.5%)를 초과하는 기업</li> <li>* 대차대조표상의 개발비 증가액 + 손익계산서상의 경상개발비 및 연구비 + 개발비 상각비 + 제조원가명세서상의 경상개발비</li> <li>**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E, G~N, P~S업종</li> <li>-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창업성장 기술개발사업', '산학연 Collabo R&amp;D 사업'참여기업</li> </ul>
A6	추천기업 <sup>2)</sup>	일반 지원 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상남도 중소기업대상' 수상 기업</li> <li>- 경상남도 선정 '고용우수기업'</li> <li>- 「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에 의거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한 사회적기업중 상법상 회사 및 「경상남도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경상남도지사가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중 상법상 회사</li> <li>- 경상남도 선정 「경남 하이(Hi)트랙」 협약기업</li> <li>-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지정 보육기업</li> </ul>

지원 대상코드	지원대상	지원부문	선 정 기 준
A7	지역특화 산업 영위기업	전략 지원부문	- <별첨1>의 도 지역특화산업을 영위하는 경상남도 소재 기업 - 중소기업부 '레전드50+' 경상남도 지역특화 프로젝트 참여기업
A8	지역전략 산업 영위기업	전략 지원부문	- <별첨2>의 도 지역혁신전략산업을 영위하는 경상남도 소재 기업 - 경상남도 및 중소기업부에서 추천하는 경상남도 소재 스마트 공장구축 기업 - 경상남도 선정 '지역혁신 선도기업' -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지정한 위기정후(주의·심각) 지역 소재 중소기업 - 경남지방 소재 제조업 영위 기업 중 경남신용보증재단의 추천서 보유기업 - 한국무역협회 경남지역본부에서 추천하는 경남지방 수출유망 중소기업
A9	전입기업	일반 지원부문	- 타 지역으로부터 경남지역으로 이전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제조업(KSIC 업종코드 10~34) 영위기업
A10	수출관련 기업	일반 지원부문	-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글로벌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 '수출바우처 사업',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경남지역 수출클럽' 참여기업
A11	소재·부품 생산기업	일반 지원부문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3조에 따른 특화선도기업 선정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4조에 따른 전문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른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또는 창업기업 선정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34조에 따른 인증기관으로부터 신뢰성인증 마크를 획득한 기업
A13	농림수산업 관련기업	전략 지원부문	- 경상남도 소재 농업, 임업, 어업(KSIC 업종코드 01~03)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상시근로자수 500인 이하 농림축산어업자(순수개인 제외) 및 농어업법인 포함
A14	명절·재해 자금 등 필요기업 <sup>4)</sup>	일반 지원부문	- 재해(수해, 화재, 지진 등), 연쇄부도 등으로 일시적 자금난을 겪는 업체중 지역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긴급자금지원이 필요한 기업으로 본부장이 인정한 기업 - 설, 추석 및 연말 등 자금수요기에 긴급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부장이 인정하는 기업
A15	기타 지원기업 <sup>4)</sup>	일반 지원부문	- 기타 특별히 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부장이 인정하는 기업
A16	경기부진·경기민감 업종 영위기업	특별 지원부문	- 아래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상남도 소재 기업<()내는 KSIC 업종코드> ① 숙박·음식점업(55~56), 다만, 주점업(5621)은 제외 ② 도소매업(45~47), 다만,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47811)은 제외 ③ 여행사·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752) ④ 운수·창고업(49~52), 다만, 주차장 운영업(52915)은 제외 ⑤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90~91), 다만,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9112),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9124), 무도장 운영업(91291)은 제외

- 주 : 1) 금융기관의 대출실행일이 관련 인증 또는 계약 등의 유효기간 이내이어야 함  
2) 유관기관 추천업체의 경우 업종별 자금지원 형평성, 경남본부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운용현황 등을 고려하여 대상업체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  
3) 지원대상업체가 복수의 업종을 영위할 경우 주된 업종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주된 업종의 기준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름  
4) 경남본부장은 지원비율·지원한도·지원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운용할 수 있음

경상남도 지역특화산업 해당업종

산업명	KSIC 코드	항목명
스마트기계산업	26429	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27211	레이더, 항행용 무선 기기 및 측량 기구 제조업
	28111	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
	28119	기타 전기 변환장치 제조업
	29162	승강기 제조업
	29169	기타 물품 취급장비 제조업
	29199	그 외 기타 일반목적용 기계 제조업
	29229	기타 가공 공작기계 제조업
	29230	금속 주조 및 기타 야금용 기계 제조업
	29271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
	29280	산업용 로봇 제조업
	29299	그 외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
	30331	자동차용 신품 동력 전달장치 제조업
첨단항공산업	22241	운송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3995	탄소섬유 제조업
	26224	전자부품 실장기판 제조업
	31311	유인 항공기, 항공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31312	무인 항공기 및 무인 비행장치 제조업
	31321	항공기용 엔진 제조업
	31322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
	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나노융합스마트 부품산업	20129	기타 기초 무기화학 물질 제조업
	20131	무기 안료용 금속 산화물 및 관련 제품 제조업
	20202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204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화학제품 제조업
	22292	플라스틱 적층, 도포 및 기타 표면처리 제품 제조업
	24191	도금, 착색 및 기타 표면 처리 강재 제조업
	24329	기타 비철금속 주조업
	26129	기타 반도체 소자 제조업
	26299	그 외 기타 전자 부품 제조업
항노화메디컬산업	10211	수산동물 훈제, 조리 및 유사 조제식품 제조업
	10839	기타 식품 첨가물 제조업
	10892	차류 가공업
	10897	건강 기능식품 제조업
	20423	화장품 제조업
	21301	체외 진단 시약 제조업
	21309	그 외 기타 의료용품 및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
	27112	전기식 진단 및 요법 기기 제조업
	27192	치과기공물 제조업
	27193	치과용 임플란트 제조업
	27194	정형 외과용 및 신체 보정용 기기 제조업
	27199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별첨2>

**경상남도 지역혁신전략산업 해당업종**

산업명	KSIC 코드	항목명
친환경스마트조선산업	29111	내연기관 제조업
	29119	기타 기관 및 터빈 제조업
	31111	강선 건조업
	31113	기타 선박 건조업
	31114	선박 구성 부분품 제조업
첨단항공우주산업	22299	그 외 기타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23121	1차 유리제품, 유리섬유 및 광학용 유리 제조업
	25112	구조용 금속 판제품 및 공작물 제조업
	28909	그 외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미래형자동차부품산업	28202	운송장비용 이차전지 제조업
	28209	기타 이차전지 제조업
	30310	자동차 엔진용 신품 부품 제조업
	30320	자동차 차체용 신품 부품 제조업
	30391	자동차용 신품 조향장치 및 현가장치 제조업
	30392	자동차용 신품 제동 장치 제조업
	31999	그 외 기타 달리 분류 되지 않은 운송장비 제조업
그린에너지산업	23222	위생용 및 산업용 도자기 제조업
	28112	변압기 제조업
	28113	에너지 저장장치 제조업
	29132	기체 펌프 및 압축기 제조업
	29133	탭, 밸브 및 유사장치 제조업
지능형의료부품 바이오헬스산업	21100	기초 의약 물질 제조업
	21220	한약약품 제조업
	28519	기타 가정용 전기기기 제조업
	29175	기체 여과기 제조업

산업명	KSIC 코드	항목명
부품소재산업	24113	합금철 제조업
	24119	기타 제철 및 제강업
	24132	강관 제조업
	25923	도장 및 기타 피막 처리업
	29293	주형 및 금형 제조업
지능형기계산업	27216	산업 처리공정 제어 장비 제조업
	29141	구름베어링 제조업
	29142	기어 및 동력 전달장치 제조업
	29241	건설 및 채광용 기계장비 제조업
	72129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나노융합소재부품산업	20111	석유화학계 기초 화학 물질 제조업
	26291	전자축전기 제조업
	26294	전자감지장치 제조업
	28902	전기용 탄소제품 및 절연제품 제조업
	29172	가정용 및 산업용 공기 조화장치 제조업
	29173	운송장비용 공기 조화장치 제조업
	30399	그 외 자동차용 신품 부품 제조업
지능형로봇산업	25113	육상 금속 골조 구조재 제조업
	26112	비메모리용 및 기타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26410	유선 통신장비 제조업
	29272	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 제조업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ICT융합산업	60310	영상물 제공 서비스업
	60320	오디오물 제공 서비스업
	62010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62021	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63111	자료 처리업
	63991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 제공업

<별표2>

**한국은행 경남본부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지원대상 제외업종<sup>1)2)</sup>**

업종명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KSIC, 제11차)	
전문 소매업	47811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운송관련 서비스업	52915	주차장 운영업
주점업	5621	주점업
금융 및 보험업	64	금융업
	65	보험업
	66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업	68	부동산업
전문서비스업	711	법무관련 서비스업
	712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731	수익업
행정업	846	사회보장보험업 및 연금업
교육 서비스업	855	일반 교습학원
보건업	86	보건업
오락관련 서비스업	9112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9124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9611	이용 및 미용업
	96122	마사지업
	96129	체형 등 기타 신체 관리 서비스업

주 : 1) 업종명은 중소기업 지원자금 배정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업종군의 통칭이며 구체적으로는 이에 해당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상 코드를 지정하여 배정 가부를 판단함. 이 때 배정 제외 업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로 지정될 경우 하위 분류에 해당하는 세세분류 영위 업종은 모두 배정 제외업종에 해당됨

2) 업체가 복수의 업종을 영위할 경우 주된 업종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주된 업종의 기준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름